

의안번호	2206461
의 퇴 인	이개호 의원
회 답 일	2024.12.18.
추 계 번호	24C58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43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제4항에 따른 재산 매입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무규정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7항) 제6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 제43조의4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라 한다)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건물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인 경우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재산처분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2. 전환하려는 목적사업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의 충족을 위한 증·개축 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관 변경 및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 용도변경·매각 등 재산처분 허가 등 목적사업 변경을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상 인허가 신청에 대한 우선적 처리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임대 5. 전환하려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경영·재무 등 컨설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제4항)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안 제43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 안 제43조의4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 및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
 - 2023.12.31.기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06개소(전체 어린이집의 4.16%)이며, 56,812명의 아동(현원, 전체 어린이집의 5.61%)이 재원¹⁾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및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였던 보조금 등에 대한 추정과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시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추정 등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관련 재정소요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함
 - (안 제43조의3) 개정안은 해산되는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에 대한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소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해산하게 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유한 잔여재산 규모 및 잔여재산 중 보조금 비중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²⁾

1) 「2023 보육통계」(교육부) 참조

2) 이외에 안 제43조의4는 어린이집 운영법인이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증·개축 비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일정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잔여재산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규정
 -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³⁾와 동 법 시행령은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면서 귀속된 재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 재산이 귀속될 주체가 변동되는데 따른 재정소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인가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을 잔여재산의 규모 및 잔여재산 중 보조금 비중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안 제36조 단서) 안 제36조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외에 추가될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필요 예산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 2024년 현재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한 증·개축비, 시설 개·보수비, 장비비 등’을 우선 지원받고, ‘농촌아이돌봄 어린이집’으로의 신청,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음⁴⁾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사업들 외에 신규 사업이 실시되거나 기존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의 규모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 용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목적사업을 변경할 어린이집 운영법인의 수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곤란함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